

제3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6. 2. 9.(월)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고종선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8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11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80호
- 제출 일: 2026년 1월 27일
- 제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2월 3일

2. 제안사유

- 출향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대해 정산 및 환수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향인의 지위 구체화(안 제2조~제3조)
- 향우회의 구성과 운영 삭제(안 제5조)
- 비용의 환수절차 신설(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향인의 지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향우회의 구성과 운영 조항을 삭제, 비용의 환수 절차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제3조 조문내용의 개정은 ‘군의 재산’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구체화하여 법령과의 정합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제5조 조문내용의 삭제는 향우회의 구성 방식을 조례로 제한하지 않고 출향인의 자율적 결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 출향인이 스스로 단체를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적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출향인의 권리와 자율성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제8조의 조문내용 개정은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 및 정산 절차를 의무화하고, 허위·부정 수급 시 군수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타당합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합성 및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한 점, 출향인의 권리를 강화한 점,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 등을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83호
- 제출 일: 2026년 1월 27일
- 제출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2월 3일

2. 제안사유

-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확대 협조 요청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3조)
- 병역명문가 우대의 범위 조항 정비(안 제7조제1항)
- 병역명문가 우대 증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

4. 관계법령

- 「병역법」, 같은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대(代)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병역 이행의 명예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예우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경북지역 33개 모든 지자체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예우대상이 해당지역 거주자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혜택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병무청에서는 전국 단위 예우 확대를 권고한 바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달성군 관내 시설감면 대상을 관외 거주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함으로써(안 제7조), 어디서나 존중받는 국가적 가치를 담아내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을 성실히 마친 가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자 한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교육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81호
- 제출일: 2026년 1월 27일
- 제출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2월 3일

2. 제안사유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었으나, 어르신과 장애인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보격차로 인한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관계 법령에 따라 달성군 내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대한민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대구광역시도 이미 2024년 20.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달성군은 2024년 기준 16.7%의 고령화율을 보이나, 절대 노인인구수는 4만을 넘어 향후 노인세대들을 위한 제도적기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령사회와 더불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노년 세대들의 디지털 문화 습득이 지체되는 현상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만 보면 겁이 덜컹”...‘기술 격차’에 노년층 65% 일상 불편. (조선경제 2025. 9. 7.)
- 이러한 사회적 아젠다 속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 및 장애인들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활디지털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중점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달성군에서 정보화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관내에서만 진행되는점, 광역에서 진행하는 ‘디지털배움터 교육 사업’의 경우 인근 자치구인 달서구에 비해 교육인원이 1/10가량인 점(달서구: 5,931명,

달성군 525명) 등을 볼 때에, 노인세대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접근성, 홍보 등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됩니다.

대구	방문 교육장 수	과정수	교육시간	교육인원
중구	6	66	179	892
동구	18	281	795	2,896
서구	15	101	308	1,464
남구	24	487	1,494	5,806
북구	15	93	255	1,009
수성구	29	212	619	2,270
달서구	24	566	1,759	5,931
달성군	11	59	176	525
군위군	51	62	124	506
합계	193	1,947	5,709	21,381

그림 1. 대구광역시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 파견교육 방문장소 현황

- 이에 본 조례안 제4조에 명기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의 현황과 능력을 조사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광역 단위의 보편적 교육 서비스와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할것입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점,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에 광역 사업과의 연계 및 중복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르신과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82호
- 제출 일: 2026년 1월 27일
- 제출 자: 전홍배 의원 등 4인
- 회부일자: 2026년 2월 3일

2. 제안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확보 및 경제적 자립을 도와 삶의 질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이며, 최근 달성군 관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및 달성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실적 대구광역시 제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실적 기준연도	총구매액	생산품 구매액	생산품 구매비율	목표치 달성 여부	비고
2023	18,941	165	0.87	달성	
2024	15,549	162	1.04	달성	
2025	18,334	304	1.66	달성	2026년 제출 예정

(자료: 장애인복지과, 2025.12.29.기준)

- 우리 달성군은 이미 2025년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1.66%(약 3억4백만원)으로 법정 목표치(0.8%)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은 부서 및 환경의 변화에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구매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단순 상위법령상 구매목표를 위한 명문화가 아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한 ▲생산품 홍보, ▲고용 연계 등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문은 향후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의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85호
- 제출일: 2026년 1월 27일
- 제출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2월 3일

2. 제안사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달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경사로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 현행 상위법령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기하여 설치를 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 및 소급적용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여전히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 기 시행중인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시비매칭)”의 3년 평균사업비가 30,144천원 정도로, 이는 관내 타 지자체(동구, 남구, 북구) 등과도 유사하며, 재정 여건상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인구비율에 대한 정책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등에 대해 필요에 따른 법적 근거를 대구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한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84호
- 제출 일: 2026년 1월 27일
- 제출 자: 서도원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2월 3일

2.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설점검·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24년 6,031건으로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장애인이 65%가량으로 주로 범죄사실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운 대상이며, 학대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 장애인 기관종사자 등 모두 합하면 60%가량 이기에, 학대문제가 더욱 드러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및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을 연계(안 제4조)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전체 20%가량)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점검(안 제5조)을 의무화 한 것은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합성에 부합하며, 대구 관내 군위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서 모두 제정하여 운영 중인 점등을 비추어 볼때,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참고 자료

그림 1.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_신고접수 현황_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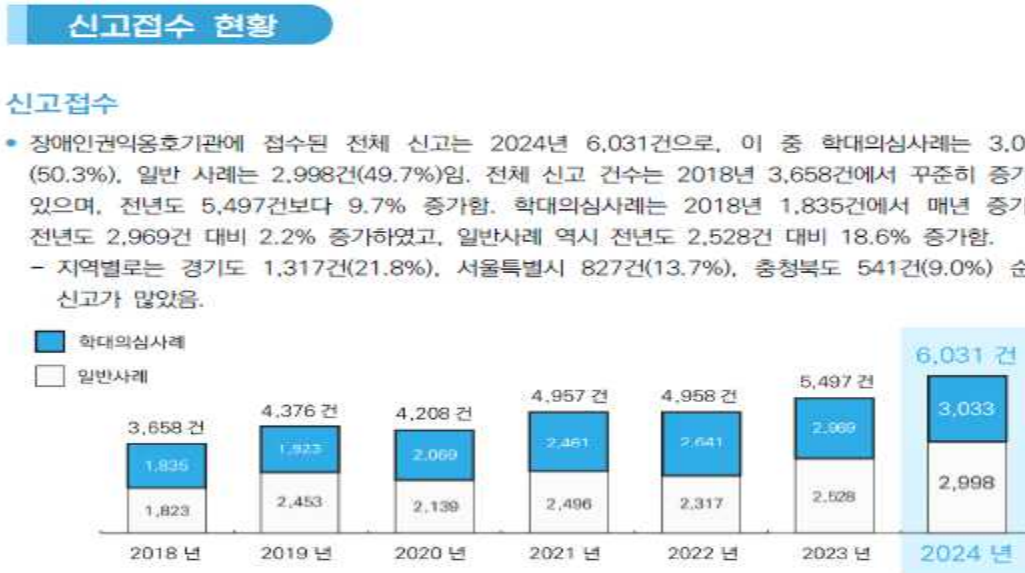


그림 2.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_학대사례 분석_보건복지부

